신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일본 관광통계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민간데이터 활용 법제

정 명 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01]이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기본시책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행정기관[02]과 독립행정법인[03]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각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로 구성된다. 그 밖에 의료, 금융·신용, 정보통신, 경제산업, 고용관리 등 민간사업 분야별 소관 부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관광객 통계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는 일본 관광청과 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이다. 일본관광청은 국토교통성 소속 행정기관이며, 일본정부관광국의 정식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로서 해외에서의 관광 홍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및 외국인 관광객의 방일 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관광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04] 이하에서는 일본관광청과 일본정부관광국이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01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５月30日法律第57号）
02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５月30日法律第58号）
03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５月30日法律第59号）
04 独立行政法人国際観光振興機構法（平成十四年法律第百八十一号） 제3조.

[그림 1] 일본개인정보보호법·가이드라인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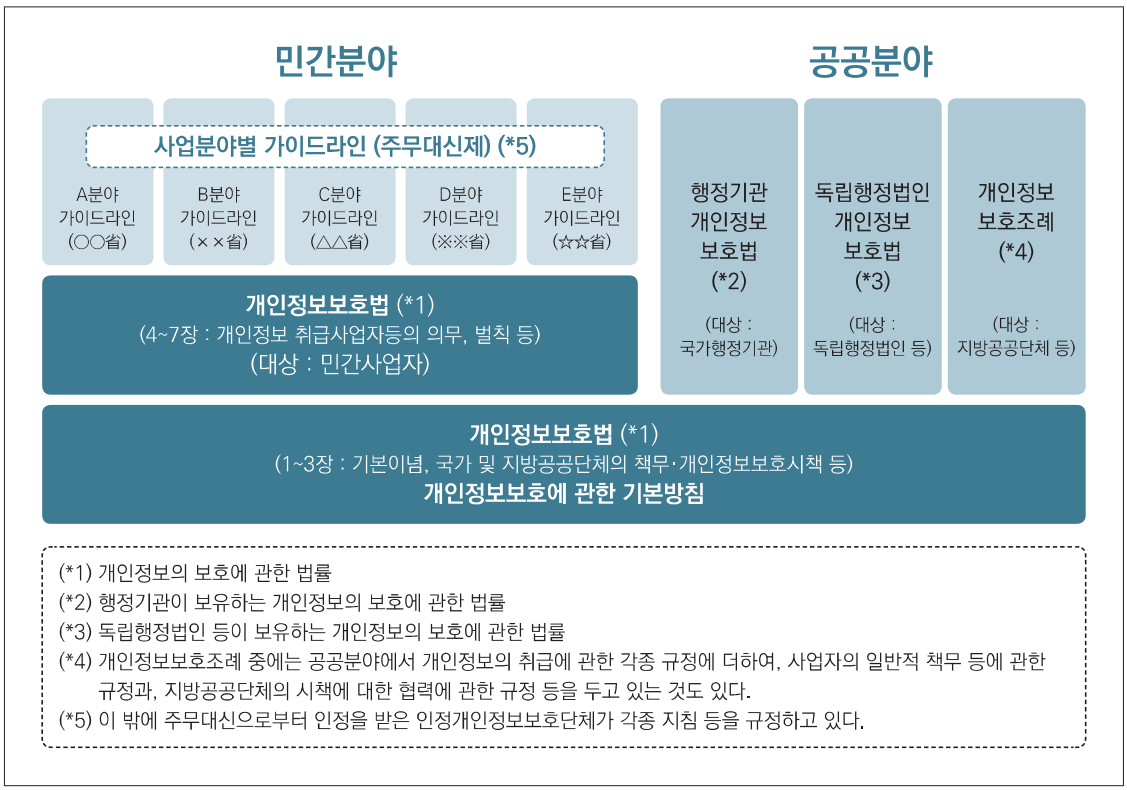

II. 일본정부관광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일본정부관광국은 국토교통성 소관으로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가이드라인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05] 독립행정법인제도는, 일본 각 부성(府省)의 행정활동에서 정책 실시 부문 중 일정한 사무 및 사업을 분리하여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업무의 질 향상과 활성화, 효율성 향상, 자율적인 운영,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06]

05 대표적으로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法律第59号),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独立行政法人等非識別加工情報編),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4章の2の規定による独立行政法人等非識別加工情報の提供に関する規則（平成29年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第2号）등이 있다.

06 独立行政法人 通則法(平成11年 法律第103号) 제2조.

1.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의 제한

일본정부관광국은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법령에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고, 또한 그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하며,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이용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07]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외의 이용

독립행정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08]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이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09]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의 예외〉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유개인정보를 독립행정법인 내부에서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 다른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게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령자가 법령에 정한 사무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그 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통계 작성 또는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 기타 보유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07 법 제3조.
08 법 제9조 제1항.
09 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일본정부관광국은 통계 작성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3. 비식별가공정보 작성 및 제공

일본정부관광국은 법률에 따라 독립행정법인등비식별가공정보(독립행정법인비식별가공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것에 한함.)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다.[10] 비식별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일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11] 독립행정법인등비식별가공정보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보유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비식별가공정보를 말한다. 관련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요 용어	정의
비식별 가공정보	개인정보에 일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
독립행정법인 등 비식별 가공정보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보유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비식별가공정보
개인정보 파일	보유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사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보유개인정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거나,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보유개인 정보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해당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
독립행정법인 등 비식별 가공정보 파일	독립행정법인등비식별가공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수단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또는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

10 법 제44조의2 제1항.
11 법 제2조제8항.

주요 용어	정의
독립행정법인 등 비식별 가공정보 취급사업자	독립행정법인등비식별가공정보파일을 사업용도로 제공하는 자. 다만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제외

독립행정법인은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독립행정법인등 비식별가공정보 및 삭제정보(보유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삭제정보'란, 독립행정법인등 비식별가공정보의 작성에 이용된 보유개인정보(다른 정보와 조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외함)로부터 삭제된 기술(記述) 및 개인식별부호를 말한다.

비식별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작성에 이용되는 보유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보유개인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12] 이는 독립행정법인으로부터 비식별가공정보의 작성을 위탁받은 자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독립행정법인등 비식별가공정보 작성 방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의 기준〉[13]

① 보유개인정보에 포함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記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것(당해 전부 또는 일부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제거하여 다른 기술 등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② 보유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할 것(당해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제거하여 다른 기술 등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③ 보유개인정보와 당해 보유개인정보에 조치를 가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연결하는 부호를 삭제할 것(당해 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제거하여 당해 보유개인정보와 당해 보유개인정보에 조치를 가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연결할 수 없는 부호로 바꾸는 것을 포함)

12 법 제44조의10.

13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4章の2の規定による独立行政法人等非識別加工情報の提供に関する規則（平成29年 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第2号）제10조.

④ 특이한 기술 등을 삭제할 것(당해 특이한 기술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제거하여 다른 기술 등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⑤ 그 밖에 보유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 당해 보유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다른 보유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과의 차이 및 기타 개인정보파일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비식별가공정보 작성에 이용된 개인정보파일장부에는 해당 비식별가공정보의 개요 사항, 사업제안을 받는 조직의 이름과 소재지, 사업제안 접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작성이 완료된 비식별가공정보는 관련 사업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사업에 이용하는 비식별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14] 비식별가공정보의 작성 과정에서 삭제된 기술(記述) 및 개인식별부호와 가공방법에 관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행정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5]

〈독립행정법인등 비식별가공정보의 안전확보 조치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의 기준〉[16]
① 독립행정법인등 비식별가공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정할 것
② 비식별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비식별가공정보를 적절히 취급하며, 그 취급 상황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비식별가공정보를 취급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비식별가공정보의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따라서 일본정부관광국은 보유개인정보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비식별가공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이에 이용된 개인정보파일장부에 필수 사항을 기재한 후, 비식별가공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4 법 재44조의12.
15 법 제44조의15.
16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4章の2の規定による独立行政法人等非識別加工情報の提供に関する規則（平成29年 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第2号）제13조.

III. 일본 관광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일본 관광청은 국토교통성의 외국(外局)으로 설립된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가이드라인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1. 행정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급

행정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서면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기록 포함)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용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할 수 있고, 그 이용목적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이용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용목적 이외의 이용에 대해서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예외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통계 작성 또는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보유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17]

2. 비식별가공정보 작성 및 제공

일본 관광청은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비식별가공정보(행정기관비식별가공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것에 한함.)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다.[18] 비식별가공정보의 작성과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독립행정법인등 비식별가공정보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작성된 비식별가공정보는 관련 사업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사업에 이용하는 비식별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17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8조.
18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第四章の二 · 行政機関非識別加工情報の提供.

Ⅳ.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일본 관광청과 일본정부관광국이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민간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신용카드사 등)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특정 이용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

일본 개인정보보호법[19]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여야 하고,[20]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 목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21]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관광객의 개인정보를 관광청 및 일본정부관광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목적을 명시하여 해당되는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이 법령에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협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당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22]

2. 익명가공정보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경우에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제공방법을 공표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임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즉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개인정보의 활용은 '익명가공정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의 비식별가공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가공하여 '익명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가공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

19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法律第57号）.
20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15조.
21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16조제1항.
22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16조제3항.

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23]

익명가공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이다.[24] 즉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로서 식별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복원할 수 없게 가공함으로써 익명성을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다. 특정 익명가공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사업의 용도로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5]

(1)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26]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때에는 가공방법에 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서 이들 정보의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7] 또한 그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그 취지는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후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익명가공데이터에 포함되는 항목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항목으로는 거주지역, 연령, 구입상품명, 제공된 익명가공데이터의 종류와 포함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후에는 그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복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사업자 자신이 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본인을 식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8]

23 大場 敏行, 約10年ぶりの改正：新しい個人情報保護法とその影響 前編, デロイトトーマツ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先端研究所ニュースレター Vol.4 (2016.1.22.).
24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2조9항.
25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2조10항.
26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36조.
27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36조6항.
28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36조5항.

(2) 익명가공정보의 제공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칙에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29]

(3) 식별행위의 금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로 복원하는 것은 금지되며,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식별행위 금지의무가 있다.[30] 완전한 익명가공정보를 작성 및 가공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거나 분석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처리를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의도하지 않게 식별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혼동하여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31]

(4) 안전관리조치

익명가공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 처리, 기타 익명가공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당해 조치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2] 익명가공정보는 그 가공방법 등이 공개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이다. 때문에 그 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조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종업원과 수탁업자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29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37조.
30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38조.
31 新保 史生, 個人情報保護法改正のポイントを学ぶ（7）:匿名加工情報の取り扱い, 国民生活 (2016.4), p.27.
32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제39조.

V. 일본의 관광통계정보 활용 현황

일본정부관광국은 일본의 내·외국인 여행자의 통계를 통합적으로 공표하는 '일본 관광통계데이터' 사이트를 구축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33] 이 사이트에서는 일본 방문 외국인 여행자 수,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방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동향(지출액, 지출비목 등), 해외 방문 일본여행자의 수 등의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통계자료는 일본관광청의 통계정보[34]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관광청의 통계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 기록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로 수행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동향조사는 환승객이나 1년 이상 체류자 등을 제외하고 일본을 출국하는 방문외국인을 상대로, 매 분기별로 7,830 샘플 수집(연간 31,320 샘플)을 목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내 주요 17개 공항과 항만에서 분기별로 조사원을 통한 청문조사를 실시하여 분기별 조사기간 종료 후 익월 말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숙박여행에 대한 통계는, 각 지역별 및 규모별로 추출된 숙박업소에 양식을 보내어, 외국인 숙박자 수, 국적별 내역, 거주지(현(縣)내 또는 현외 등)를 기재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4월 말 현재 2018년도 1분기 통계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일본관광청은 관광통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프레임을 제공하고, 통계활용의 효과를 확인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청이 관광통계의 허브 기능을 함으로써 관련 행정기관, 경제계·민간사업자,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통계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였다.[35]

2017년 10월 일본정부관광국은 데이터에 의거한 디지털마케팅의 본격 도입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광국이 보유한 데이터에 관하여 그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부서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시장횡단적으로 통일적인 지표로 데이터의 수집·관리·분석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한 빅데이터를

33 日本の観光統計データ(Japan Tourism Statistics), https://statistics.jnto.go.jp/.
34 일본 관광청 통계정보에 대해서는 http://www.mlit.go.jp/kankocho/siryou/toukei/index.html 참조.
35 観光庁観光経済担当参事官室, 観光統計の概要と利活用について(平成25年3月22日).

보유하는 외부 사업자와 제휴하여 잠재적인 방일 타겟층에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광국 내부 데이터 및 제휴된 외부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타겟과 미디어 선정, 광고 방법 선정 등 프로모션 효과의 극대화 및 실시 결과의 정량적 파악, 분석 결과에 근거한 개선을 강화하고자 한다. [36]

VI. 결론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37] 발표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고,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보유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보유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와 비식별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 활용산업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익명·비식별가공정보에 대해서도 재식별을 위한 복원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1-2년 사이에 디지털환경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왔다. 향후 일본의 제도적 발전 동향과 운용 실태를 주시하여,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36 日本政府観光局 報道発表, デジタルマーケティングの本格導入に向け、専門部署を新設 (2017年10月12日).
37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基本方針 (平成１６年４月２日 閣議決定, 平成２８年１０月２８日一部更).

참고문헌

大場 敏行, 約10年ぶりの改正：新しい個人情報保護法とその影響 前編, デロイトトーマツ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先端研究所 ニュースレター Vol.4 (2016.1.22.)

新保 史生, 個人情報保護法改正のポイントを学ぶ（7）:匿名加工情報の取り扱い, 国民生活 (2016.4)

日本政府観光局 報道発表, デジタルマーケティングの本格導入に向け、専門部署を新設 (2017.10.12.)

観光庁観光経済担当参事官室, 観光統計の概要と利活用について(平成25年3月22日)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５月30日法律第57号）

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５月30日法律第58号）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15年５月30日法律第59号）

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第4章の2の規定による独立行政法人等非識別加工情報の提供に関する規則（平成29年 個人情報保護委員会規則第2号）